

# 1110 정 관

개정 '90. 12. 28	개정 '95. 3. 16	개정 '97. 12. 1	개정 '94. 4. 29	개정 '95. 5. 30
개정 '94. 4. 29	개정 '95. 5. 30	개정 '98. 2. 10	개정 '94. 5. 17	개정 '96. 10. 1
개정 '99. 3. 25	개정 '97. 3. 12	개정 '99. 8. 30	개정 '00. 7. 24	개정 '01. 12. 11
개정 '02. 3. 20	개정 '05. 5. 24	개정 '07. 1. 1	개정 '10. 3. 15	개정 '12. 4. 15
개정 '12. 8. 10	개정 '13. 1. 1	개정 '13. 8. 26	개정 '16. 3. 14	개정 '17. 12. 29
개정 '18. 3. 12	개정 '19. 2. 1	개정 '23. 3. 20		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상호)** 이 회사는 “주식회사 포스코 와이드”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“POSCO WIDE” 라고 표기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부동산 매매, 임대업, 관리, 개발, 조사연구 및 기타부동산 관련 서비스업
- 통신, 위생관리용역 및 용역경비(시설경비)사업
- 보험대리업
- 도.소매업
- 요식업
- 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, 전기공사업
- 체육시설업, 운동설비 운영업, 운동경기 및 기타오락관련산업
- 제철회사 등에 관련된 용역업
- 시설물유지관리업
- 주택관리업
- 지역냉난방업
- 관광객 이용시설업, 관광숙박업, 관광서비스업,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편의시설업
- 조림, 육림, 원예 및 임산물 재배업
- 통신판매업
- 야영장업
- 아파트, 상가, 콘도미니엄 및 일반건축물의 분양, 임대, 관리업
- 주택건설사업, 임대주택사업 건설과 운영
- 문화서비스업(오락실, 소극장, 문화교실, 행사장, 미술관, 연극영화상영관 등)
- 종합스포츠허브 조성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
- 플랜트분야 시운전, 조업, 정비, 기자재제품 품질점검 용역
- 플랜트분야 토목, 건축, 기계, 전기설계업무의 기술용역
- 플랜트사업 분야(사업개발에서 유지보수) 기술용역
- 발전분야(화력발전) 시운전 용역
- 국내태양광 발전설비,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운영
- 화학물질 도매업
- 국내외 환경기초시설 운영, 유지관리 및 개보수 업무
- 환경전문공사업, 환경관리대행기관
-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
-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, 유지관리 및 개보수 업무
-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,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
- 도로관리 운영, 철도관리운영에 관한 사업
- 위 각호에 직접,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

**제3조(본점의 소재지)**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기타 필요한 곳에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공고 방법)**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poscowide.com>)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## 제2장 주 식

**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)**

-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만주로 한다.
- 1주당 액면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** 회사는 설립시에 1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
**제7조(주식 및 주권의 종류)**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기명식으로 하고,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, 십주권, 백주권, 천주권의 4종으로 한다.

**제7조의2(주권불소지)** 기명식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의3(신주인수권)** ①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. 다만,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, 배정할 수 있다.

②1항에 의거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, 신주의 발행 가액과 납입기일,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기일의 2주 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
③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**제8조(명의 개서 및 등록)** ①주식의 양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명의개서를 청구코자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과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질권의 등록, 변경 또는 신탁의 표시를 청구코자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당사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과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 할 때에도 같다.

**제9조(주권의 재발행)** ①주권의 분할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구 주권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주권의 도난, 분실, 멸실, 주권의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오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제권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수료)** 제 8조 및 제 9조에 정한 청구의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.

**제11조(주소와 인감의 신고)** ①회사의 주주, 등록 질권자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,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 
 ②법정 대리인,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주주 명부의 폐쇄)** 매 결산기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그 총회 종결일까지, 또한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고로서 미리 정한 기간중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정지한다.

## 제3장 주주총회

**제13조(소집)** ①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  
 ②총회의 일시, 장소와 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**제14조(소집통지)**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의장)**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이사회 결의에 미리 정한 순위에 따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**제16조(의결권)** ①주주는 주식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  
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법인인 주주는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..

**제17조(결의)** 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총회의 의사록)**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.

## 제4장 이사 및 이사회

**제19조(이사의 수)**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.

**제20조(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)** ①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 
 ②회사는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**제20조의 2(이사의 자격)**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①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자②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

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③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**제21조(이사의 임기)**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. 그러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
**제22조(이사의 직무)**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 
 ②부사장,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 업무를 분장하며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2조의2(이사의 보고의무)**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** ①이사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다.  
 ②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**제23조의 2(이사의 보상 및 책임감경)** ①회사는 이사가 회사 이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, 제소,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,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 
 ②회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,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을 포함)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.  
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 2 및 상법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24조(구성)** ①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.  
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25조(소집)** 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  
 ②이사회 소집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일로부터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회일 1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.  
 ③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
**제26조(의장)** 이사회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7조(결의방법)** ①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.  
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 
 ③의제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제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
**제28조(결의사항)**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
**제29조(의사록)** 이사회의 의사는 그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비등기임원)**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둔다.  
②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 
③비등기임원은 부사장, 전무, 상무로 구분하며, 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규정의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퇴직금 기준에 준한다.  
④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21조 단서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.

**제30조의2(상담역과 고문)**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
## 제5장 감 사

**제31조(감사의 수)** 회사에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.

**제32조(감사의 선임)**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백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**제33조(감사의 임기)**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.

**제34조(감사의 직무)**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상법이 전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을 감사한다.  
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 
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**제35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** ①감사의 보수와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다.  
②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
## 제6장 계 산

**제36조(영업년도)**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7조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)** ①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1. 대차대조표  
2. 손익계산서  
3. 상법 제447조 1항 3호에서 정한 서류  
4. 연결재무제표

5. 영업보고서  
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회일의 일주일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,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잉여금의 처분)**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.

1. 이익준비금 : 금전배당액의 10분의 1이상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주주에 대한 배당금
4. 임원 퇴직공로금
5. 임의적립금
6. 배당평균적립금,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
7. 차기이월 이익잉여금

**제39조(이익배당)** 이익의 배당은 금전,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,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내규)**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업무추진에 관한 세칙,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
**제2조(기타사항)**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의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23. 3. 20부터 개정, 시행한다.